

부산광역시사하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낙시어선업법 개정으로 낙시어선업 신고서 자치구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신설코자 함

2. 주요골자

수산관계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대상에 낙시어선업 신고를 추가함

[기존조례 제3조 (별표1) 9. 수신관계 제10호 신설]

3. 관련법규

○ 낙시어선법 제4조 및 제21조의2

○ 부산광역시사하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1

4. 검토의견

○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(낙시어선법)의 개정에 따른 하위관련 각종 법규의 보완적 차원의 조례개정사항으로, 낙시어선업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수수료액(2,500원)도 부산시내 각구군과 동일하게 산정되어 있음.

○ 관련법이 2002. 5. 13공포되고, 2002. 11. 14부터 시행된점을 볼 때 약 2개월간의 공백상태가 있었던점이 있으나, 하루 빨리 개정되어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통과시킴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2003. 1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제정건은

- 2003년 1월1일부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통합시행됨에 따라 기히 설치 운영 되고있는 부산광역시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운영함이 입법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
- 특히 관련법에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점을 감안한다면

위 조례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사회도시전문위원 정 금 배